

군산시 공고 제2017-736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현행 정비하여 적법한 인사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사용된 약칭 삭제(제1조)
-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추가(제3조)
-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제6조의2)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제6조의2)
- 전문임기제 도입 관련 응시자격 요건 신설(제14조)
-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기재항목 변경 등(별지 및 별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454-2252, FAX454-2228)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방법이든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063-454-2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 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법제46조의2” 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법제46조의2” 로, “법제6조의2” 를 “법제66조의2”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기간” 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2항” 을 “영제2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7조의4제4항” 을 “영제27조의4제4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3조의2제1항” 을 “영제33조의2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8조의4제1항제4호” 를 “영제38조의4제1항제4호”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1조의4제2항” 을 “영제21조의4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7일” 을 “3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이상으로 한다” 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 중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을 “자로서 지방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별표5의3]과” 를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u> 제4조와 <u>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u>에 따라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u>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u> ----- ----- -----.</p>
<p>제2조(적용범위) <u>공무원</u>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u>----- ----- ----- -.</p>
<p>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1. <u>법제46조의2</u>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u>법제6조의2</u>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p> <p>2. <u>제21조의2</u>에 따른 견습직원의</p>	<p>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u>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u> 법제46조의2-- <u>법제66조의2</u> -----</p> <p>2. <u>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u></p>

견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신 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라 한다)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

- 3. 영 제27조제2항-----
- 4. 영 제27조의4제4항-----
- 5. 영 제33조의2제1항-----
-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
- 7. 영 제21조의4제2항 -----
-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다.

1. 2. (생략)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은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생략)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1. 2. (현행과 같음)

3. -----
----- 3일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위원) ① -----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로서 지방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규정(이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 ⑧ (생략)

⑨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3]과 같다.

⑩ (생략)

하 ‘연구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

⑩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관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 12호 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표 2] <개정 2013.12.0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계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자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를 전공한 자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3.12.02>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 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 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 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 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 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 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고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 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
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4.06.16>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개정 2014.6.1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p> <p>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잠 업	<p>기사 :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농 화 학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 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방송통신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 자(3)	
사무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인상병리사(12) 법의학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원소추진급(특수) 방사선사(5) 임상심리사1급(7)	인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3) 임상심리사1급(3)	인상병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1급) 임상심리사2급(3)	인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인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B급
	대 기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B급(7)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B급(3)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정비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술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경영, 반도체설계)	
	금 속 야 급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1·2급 항해사	3·4급 항해사	5·6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3·4급 기관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1·2급 항해사	3·4급 항해사	5·6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3·4급 기관사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위생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시 설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수도토목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시 설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조리 운전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 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헌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 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계 가 공, 보 일 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기 능 장 : 계 정 비, 용 접, 금 형 제 작, 판 금 제 관, 배 관	
	농업기계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급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관급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p>공 업</p>	<p>기계운전</p>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급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급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p> <p>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p>
<p>공 업</p>	<p>조 선</p>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p>	
	<p>일반전기</p>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조종 감독자, 핵연료물질취 급감독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료물 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 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 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 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 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p> <p>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잡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산물 검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임상병 리사, 의무기록사, 간 호사, 위생사, 응급구 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 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응 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 율 적용: 간호사, 조산 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 보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 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 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가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 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 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 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 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 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환 경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시 설	측 지	기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기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신 사	기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관급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급, 제관, 농업기계, 배관,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관급, 타출관급,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연구	섬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공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학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촌지도	잠업근층 잠업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p>농업연구</p>	<p>작물보호</p>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생명유전</p>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농촌생활</p>	<p>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p>
<p>농촌지도</p>	<p>농촌생활</p>		
<p>농촌지도</p>	<p>농업경영</p>	<p>산업기사 :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농촌지도</p>	<p>농촌사회</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p>
<p>농업연구</p>	<p>농 공</p>	<p>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농업연구</p>	<p>농 공</p>	<p>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농 공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농촌지도	임 업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환경연구	환경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 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 계, 소음진동, 선박건축,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 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 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 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 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 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 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이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 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향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향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향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 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p>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건축운영	<p>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p> <p>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건축사</p>	<p>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통신운영	<p>기술사(정보통신)</p> <p>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p> <p>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p>	<p>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p>
전기운영	<p>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p> <p>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p>	<p>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p>
기계운영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p> <p>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각,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p>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농 업 연 구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농 업 연 구 (잡업근층)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p>
농 업 연 구 (농 공)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p>
녹 지 연 구	<p>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p>
해 양 수 산 연 구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

1.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

외국어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평정점
영어	토플 530점(CBT197점), 토익 700점, 텡스 625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 성적 이상	0.25
그 밖의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 성적 이상	0.25

비고: 임용권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만점(0.25점) 범위에서 점수대별로 평정점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자격증

구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군산시 공고 제2017-766호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83호, 2016. 10. 31, 제정으로 군산 어린이공연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맞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 제정
- 공연장 사용허가,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 설비 또는 기기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어린이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54129/군산시 대학로 330(나운동, 군산어린이공연장팀)
(전화: 063-454-5742, 팩스: 063-465-5745)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어린이공연장팀(전화: 063-454-5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상반기 사용예약은 전년도 12월, 하반기 사용예약은 당해년도 5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

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4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을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총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기본사용료 감면 : 학교장 또는 총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결재가 완료된 행사계획을 공연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연장 사용 등) ①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을 할 경우 공연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공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객을 수용가능 객석수를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 ④ 공연과 관계되는 관측, 사인회 장소는 사전승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공연장의 사용시간의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 ⑥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⑦ 공연장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공연 및 전시시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측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 발행) ① 입장권의 판매 및 대표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한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10조(입장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 8호서식)와 입장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공연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 사용자가 배치한 안전요원은 공연장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가 공연장의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져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시설사용 허가서

■ 허가사항

사 용 자 (성 명 / 주 소)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 (일간)					
사 용 료 합 계		감면료		냉.난방 사용료		계
사용료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사용료 납부일자	계 약 금 : 원 일 까지					
	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					

■ 허가조건

1.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 공연장)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연장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공연장에 그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3. 공연장 시설 및 집기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허가취소
 - ①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 ②사용료를 체납하였을때
 - ③공익상 필요할 때
 - ④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뒷면]

■ 허가관련 공연(행사)의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 ① 공연 셋업은 담당직원의 안전여부가 확인 된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② 무대 반입 및 반출시 모든 물품은 담당직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무대시설 사용시에는 공연장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④ 무대사용은 지정된 시간에 한하며, 출연자는 리허설 및 공연시간 이외의 무대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⑤ 공연장에서의 음식물, 음주, 흡연을 금지 합니다.
- ⑥ 공연 중 사진 촬영 및 꽃다발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⑦ 출연자들은 객석에서 무대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 주십시오.
- ⑧ 화재/비상시에는 안내방송 및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 ⑨ 무대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약류 및 유류, 가스통 등의 위험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⑩ 출연자는 분장 후 로비 및 외부로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⑪ 방염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무대장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⑫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 및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장비 등을 설치할 때는 무대감독과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십시오.
- ⑬ 기념촬영은 리허설 시에만 가능합니다. 공연 종료 후에는 무대안전과 원활한 무대 철수를 위해 촬영을 금지합니다.
- ⑭ Staff회의 시 협의한 부대시설 사용 내용에 따라 공연진행하여 주십시오.
- ⑮ 무대 및 객석의 공연장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⑯ 리허설, 공연 시 출연자 및 관객에게 위협이 되는 연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⑰ 출연진/STAFF 외 무대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허가대장

허가		공연명	신청인		사용일	공연내용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별지 제6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공연 취소신청서

허가번호	호			
개인및단체명			공연(행사)명	
대표자성명			사용일	
주 소				
【취소사유】				
사용료기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액				
반환금입금처	은행 및 입금계좌		예금주명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연·전시·행사 명칭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핸드폰		
						사무실		
공연·전시·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신청사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장 권 검 인 신 청 서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구 분 입장권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검 인 부

일련 번호	검 인 년월일	입장권의 종류 ()	매수	검인자	확인자	비고
				성 명	성 명	

군산시 공고 제2017-800호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 법제처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법제처 법률전문가 용역을 거쳐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용어정비, 조례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입점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다.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2)
- 라. 입점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마. 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사. 자체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해양수산물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063-443-5757), e-mail(jiys66@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또는 e-mail 제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이하 “수산물센터”라 한다)는 군산시 내항2길 216(금동)(해망동 1011-21, 금동 57-4, 57-5번지)에 둔다.

제3조(투자방법) ①수산물센터는 군산시장이 건립하고, 입점자는 영업시설인 수조, 간판집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부담한다.

②영업홍보에 필요한 경비 등 영업비용도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수산물센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상인회,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입점자격) ①수산물센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수산물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군산시에서 3년 이상 수산물 유통 판매 업종을 경영하고 영업실적이 있는 사람
2. 사용자 선정 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제1항에 의한 순위결정시 동 순위자간 입점은 추첨을 통해서 한다.

③수산물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수산물센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60일 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③수산물센터 신축 또는 공익목적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2년 이내에 동시갱신 허가하며 허가를 받은 선어, 건어, 활어, 횃집 점포의 위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배정 한다.

제6조의2(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입점자는 수산물센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 전대 담보설정 또는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 중 배우자, 직계비속에 의한 상속인이 승계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승계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계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은 전 사용자의 잔여 사용기간으로 하며, 5년 이내 재승계는 불허하며, 사망 또는 10월 이상 장기입원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7조(전세금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시 군산시장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세금을 납입한 사람이 수산물센터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되어 납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산물센터의 대부·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 등 면할 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할된 사용료를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③수산물센터 사용허가 기간 중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 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 관리비는 입점자가 부담한다.

제7조의2(사용료) ①시장 사용자는 사용료 요율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율은 건물 및 부지평가액의 30/1000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8조(입점자의 의무) ①입점자는 수산물센터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할 수 없다.

②입점자는 10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 관리부서에 휴업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입점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입점자는 시장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장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군산시장의 승인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기타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8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 휴업한 때
3. 시장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장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관련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익목적으로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보험가입) ①군산시장은 수산물센터의 입점자에게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산시장이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점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상인회 및 위탁을 받은 개인·단체는 수산물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운영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① 수산물센터 상인회장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자에 한하며 상인회 회칙에 따라 선출된 상인회장을 군산시장이 임명한다.

② 상인회장이 수산물센터의 질서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상인회 회원의 70%이상 상인회장 해임 요구 또는 자체 규정에 의한 해임이 의결될 경우 해임한다.

제13조(준용규정) 수산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수산물종합센터 공유재산 유사사용 허가조건」을 준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997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06 조례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2 조례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01 조례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0.00 조례 제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수산물종합센터를 새로이 건립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7-811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풍부한 관광자원을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하고 주변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효과적인 관광마케팅 방안 마련
- 팸플릿이나 홍보서적에 비해 시간·공간적 제약이 적고 정보의 확산속도가 빠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체계 구축

2. 주요내용

자치법규명	개정사항	비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장 제목 “지원” 을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 으로 수정 제3장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 제18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 활용 및 지원방안 제19조(소셜미디어의 서포터즈 운영 등) ▶ 인원, 운영기간, 위·해촉 제20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 ▶ 지원방법·범위	

3. 의견제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Tel. 063-454-3336, Fax. 063-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담당자 이승범(063-454-3336)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10. “소셜미디어 서포터즈(social media supporters)”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의 각종 관광행사, 축제,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장의 제목 “지원”을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축제·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문화·예술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홍보 이벤트
2.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 및 축제 등 관련 행사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유발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 콘텐츠 원고료. 이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 서포터즈증, 명함 제작 등
- 3. 교육, 연수 및 견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신 설></p>	<p>제2조(정의)</p> <p>9.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p> <p>10. “소셜미디어 서포터즈(social media supporters)”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의 각종 관광행사, 축제,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장 지원 <신 설></p>	<p>제3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p> <p>제18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p> <p>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축제·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문화·예술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홍보 이벤트 2.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p>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p> <p>제19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p> <p>① 시장은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 및 축제 등 관련 행사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p>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유발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 콘텐츠 원고료. 이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서포터즈증, 명함 제작 등
3. 교육, 연수 및 견학

[별표 1]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지원조건	지급금액(원)	비고
원고료	1건	50,000	

※ 동일인의 1개월 내 원고료 지급 횟수를 2회로 제한함

군산시 공고 제2017-824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 나. 「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함(안 제1조)
- 다.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예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라. 서류송달 관련 규정의 위임사항 및 교육·경비 지급사항 등의 의미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3,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kmino2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부서의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산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 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7-825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송달에 따른 송달부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부과회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세환급금의 처리, 지급, 충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마.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3,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kmno21@korea.kr)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②항, 제8조제②항, 제10조제②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을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으로 한다.

②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제2조제1호, 제34조제①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나. 제18조제①항 중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다. 제29조제②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을 “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연락처	주소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 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군 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금 내역										결과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과		지급통지사항															
		연도	연도 기본 번호	세목 번호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목 연월일	사유	납금 차	계장	과장	조장 연월일	지방세환급금			출당	계좌 지정	명령 번호	지급명액	납당자	금당자	과장	납당자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계	본세금	가산금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계																				
		입면 번호	연도	연도 기본 번호	세목 번호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목 연월일	사유	납금 차	계장	과장	조장 연월일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계	출당	계좌 지정	명령 번호	지급명액	납당자	금당자	과장	납당자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합계																																		
		연도계																																		
		총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결정액	지급명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⑤ = ④	결과	
									납당자	과장
전월까지 누계										
당월계										
연도계										
총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 x 257mm (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00세	00세	00세	00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계장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7-828호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3조)
- 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
(종전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 → 안 제2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징수과(전화 063-454-2473, 팩스 063-453-9183, 전자우편 : ykt762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납세지원계(전화:063-454-247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 붙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 를 “제146조제1항제3호” 로, 제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를 “법 시행규칙 제54조” 로,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 로, 나목 중 “법 제132조” 를 “법 제111조” 로, 다목 중 “법 제140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로,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 로, 제2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로, 제2조제3항 “법 제138조제1항제5호” 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 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한다.

④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 를 “법 제146조” 로 한다.

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로 한다.

⑥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고시 제2017-5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94)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156(2016.12.09.)호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94)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경암동 635-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94)사업
 - 명 칭 : 군산경찰서옆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2,604.2㎡ (주차대수 83면)
 - 일반형 68면, 경차용 3면, 장애인용 3면, 임산부전용 1면, 여성우대 8면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성 명 : 군산시장(교통행정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18.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 참고
7. 관계도서 : 실음 생략

붙임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경암동	1	635-17	차	211.2	211.2	군산시					
	2	635-14	차	97.8	97.8	군산시					
	3	635-9	도	41.1	41.1	군산시					
	4	635-24	대	116.7	116.7	송제민	군산시 대명동 388-5				
	5	635-13	대	131.0	131.0	김점순	군산시 조촌동 903-1 시 영아파트 가동 903호				
	6	635-18	대	86.8	86.8	조행복	군산시 경암동 635-14				
	7	635-19	대	193.1	193.1	진막동	군산시 경암동 635-19				
						오정순	군산시 경암동 635-19	군산시수산업 협동조합	군산시 조촌동 828-1	근저당	
						최우영	군산시 경암동 635-19				
	8	635-20	대	222.1	222.1	박정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1 남양,대명아파트 202 동 203호				
	9	635-25	차	274.8	274.8	군산시					
	10	635-27	차	104.3	104.3	군산시					
	11	635-28	차	159.3	159.3	군산시					
	12	635-29	대	98.1	98.1	김장석	군산시 중동 270-19				
	13	635-30	대	121.1	121.1	김영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11. 501호				
	14	635-31	대	111.3	111.3	씨제이대한 통운(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15	635-43	도	499.5	135.0	군산시					
	16	635-32	대	197.4	197.4	유유임	군산시 경암동 635-32				
	17	635-23	대	129.3	129.3	안상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47 두산힐스빌아파트 108동 503호				
18	635-22	대	93.6	93.6	최남철	군산시 경암동 572					
19	635-33	대	80.2	80.2	김희순	군산시 장미동 10-2					
계	19필지			2,794.9	2,604.2						

붙임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군산	경암	635-14 635-17 635-25 635-27 635-28	담장	블록	109.0 M	군산시												
				수목	은행나무 :	1.0 주													
					은행나무 :	1.0 주													
				대문	철재	1.0 식													
				대문	철재	1.0 식													
				문주	콘크리트	1.0 EA													
2	군산	경암	635-29	주택	조적, 슬래브	76.0 m ²	김장석	군산시 중동 270-19											
					조적, 슬래브	26.0 m ²													
				창고	조적,스레트	17.0 m ²													
					지붕,스레트	5.1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1.0 M													
3	군산	경암	635-30	주택	조적, 스투트	57.0 m ²	김영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11, 501호											
					지붕(스레트)	77.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20.0 m ²													
					지붕(스레트)	27.0 m ²													
				창고	조적, 슬라브	12.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2.0 M													
4	군산	경암	635-31	주택	조적, 스투트	83.0 m ²	씨제이 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지붕(스레트)	106.0 m ²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	군산	경암	635-24	주택	조적, 스투트	45.0 m ²	송제민	군산시 대명동 388-5					
					지붕(스레트)	52.0 m ²							
				주택	조적, 슬라브	17.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6.0 m ²							
					지붕(스레트)	7.0 m ²							
				화장실	조적,슬라브	6.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3.0 M											
6	군산	경암	635-18	주택	조적, 함석	94.0 m ²	조행복	군산시 경암동 635-14					
				창고	목재,스레트	8.0 m ²							
					지붕,스레트	9.0 m ²							
				창고	목재,함석	7.0 m ²							
				수목	대추나무 :	3.0 주	조행복	군산시 경암동 635-14					
					B14								
					앵두나무 :	1.0 주							
					B5								
					오가피나무 :	2.0 주							
					B14								
					웃나무 : B14	2.0 주							
					대추나무 (묘목) : B2	1.0 주							
					보리수 : B5	1.0 주							
					살구나무 :	1.0 주							
B5													
참빗살나무 :	1.0 주												
B10													
동백나무 :	1.0 주												
B10													
감나무 : B12	1.0 주												
매실나무 :	1.0 주												
B5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군산	경암	635-13	주택	황토, 스투트	46.0 m ²	김점순	군산시 조촌동 903-1 시영아파트 가동 903호				
					지붕(스레트)	68.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34.0 m ²						
					지붕(스레트)	40.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3.0 M						
8	군산	경암	635-32	주택	조적, 스투트	65.0 m ²	유유임	군산시 경암동 635-32				
					지붕(스레트)	96.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36.0 m ²						
					지붕(스레트)	50.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21.0 m ²						
8	군산	경암	635-32	주택	지붕(스레트)	21.0 m ²	유유임	군산시 경암동 635-32				
				창고	조적, 스투트	2.0 m ²						
					지붕(스레트)	2.0 m ²						
				창고	조적, 슬라브	9.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16.0 M						
9	군산	경암	635-23	주택	조적, 스투트	81.0 m ²	안상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47 두산힐스빌 아파트 108동 503호				
					지붕(스레트)	93.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34.0 m ²						
					지붕(스레트)	34.00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2.0 M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0	군산	경암	635-22	주택	조적, 슬라브	72.0 m ²	최남철	군산시 경암동 572							
					조적, 슬라브	24.0 m ²									
				창고	목조, 스투트	4.0 m ²									
					지붕(스레트)	4.0 m ²									
				대문	철재	1.0 식									
11	군산	경암	635-19	창고	조적, 함석	5.0 m ²	오정순	군산시 경암동 635-19	군산시 수산업 협동조합	군산시 조촌동 828-1	근저당				
				창고	조적, 함석	11.0 m ²									
				창고	조적, 스투트	4.0 m ²									
					지붕(스레트)	4.0 m ²									
				창고	조적, 스투트	2.0 m ²	진막동	군산시 경암동 635-19							
					지붕(스레트)	2.0 m ²									
				담장	블록	6.0 M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1.0 M										
			최우영	군산시 경암동 635-19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4.0 M
													대문	철재	1.0 식
12	군산	경암	635-20	주택	조적, 슬라브	49.0 m ²	박정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1 남양대명아파트 202동 203호							
					주택	조적, 스투트							45.0 m ²		
				지붕(스레트)		50.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60.0 m ²									
					지붕(스레트)	64.0 m ²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	군	산	경	암	635-20	창고	조적,스레트	2.0 m ²	박정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1 남양대명아파트 202동 203호				
							지붕(스레트)	2.0 m ²						
							창고	조적,스레트						6.0 m ²
								지붕(스레트)						6.0 m ²
							담장	블록						10.0 M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수목	감나무 : B10						1.0 주
13	군	산	경	암	635-33	주택	조적,슬라브	49.0 m ²	김희순	군산시 장미동 10-2				
							창고	조적,슬라브						5.0 m ²
							창고	조적,기와						6.0 m ²
							창고	창고,스레트						3.0 m ²
								지붕(스레트)						3.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M

군산시 고시 제2017-60호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 나. 개별주택수 : 20,787호
-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등(개별 내용 생략)
-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2. 이의신청 방법

- 가. 신청기간 : 2017. 4. 28 ~ 5. 29.
- 나. 제출자 및 장소 : 주택소유자 등 / 시청(세무과), 읍·면·동
- 다. 제출방법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3. 시행일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7-760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군산시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군산시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 나. 위치 : 군산시 중동 237-6번지 일원
-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적 : 80,698㎡
 - 규모 : 토지 102필, 지장물 39건
- 라.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마.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성명 : 군산시장 (도시재생과)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붙임 편입조서 참조)

- 가. 토지 및 물건 등 : 군산시 중동, 금암동 일원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7. 4. 27. ~ 2017. 5. 12. (15일간)
- 나. 열람장소 : 군산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계 (☎063-454-3733)
-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후 2017. 5월 이후부터 보상협의를 예정
-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를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함.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바. 보상금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중동	264-1	도	8,857	2,858	국	건설교통부				
2	중동	271-8	대	224	224	김혜현	전라북도김제시만경읍산본로98	대야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대 야면 지경 리 773	근저당권 지상권	
3	중동	271-9	대	670	670	김혜현	전라북도김제시만경읍산본로98	대야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대 야면 지경 리 773	근저당권 지상권	
4	중동	272-13	전	248	248	김혜현	전라북도김제시만경읍산본로98	대야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대 야면 지경 리 773	근저당권 지상권	
5	중동	272-15	전	33	33	김혜현	전라북도김제시만경읍산본로98	대야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대 야면 지경 리 773	근저당권 지상권	
6	중동	272-28	전	210	210	군산시					
7	중동	272-29	전	202	202	군산시					
8	중동	273-16	도	945	18	국	건설부				
9	중동	273-17	전	175	175	군산시					
10	중동	273-18	대	53	53	군산시					
11	중동	273-62	대	116	116	군산시					
12	중동	273-69	대	56	56	군산시					
13	중동	273-79	대	43	43	김학모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3길27 (창인동1가)				
14	중동	273-80	대	122	122	군산시					
15	중동	273-224	전	8	8	최복순외6명					
16	중동	273-226	대	31	31	군산시					
17	중동	274-10	도	5,064	36	국	건설교통부				
18	중동	274-227	대	59	59	군산시					
19	중동	274-228	대	793	793	이기정외3명					
20	중동	274-352	대	74	74	군산시					
21	중동	274-353	도	7	7	국	재정경제원				
22	중동	274-423	도	13	13	양옥분	군산시 중동 274-118				
23	중동	274-491	대	19	19	김창수외3명					
24	중동	262	대	71	71	최정순	군산시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3동903호				
25	중동	263-5	대	62	62	국외1명	기획재정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6	중동	265-6	대	3	3	국	건설부				
27	중동	265-50	대	129	129	정봉덕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387	군산시		지상권	
28	중동	265-51	대	86	86	정봉덕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387	군산시		지상권	
29	중동	265-54	대	19	19	국	기획재정부				
30	중동	265-55	도	59	44	국	기획재정부				
31	중동	263-4	대	23	23	국외1명	기획재정부				
32	중동	263-3	대	100	100	국외2명	기획재정부				
33	중동	262-1	대	56	23	군산시					
34	중동	265-92	대	102	33	국	건설부				
35	중동	265-48	도	37	3	국	건설부				
36	중동	269-1	대	172	172	군산시					
37	중동	270-1	전	206	206	장동월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73				
38	중동	273-44	대	470	470	박유업	군산시 중동 269-1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 진구 백제 대로 566 (금암동)	근저당권	
39	중동	270-82	전	228	228	조정희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로100, 112동1603호 (수송동,군산수송세영리첼아파트)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번 영로 162 (조촌동)	근저당권 지상권	
40	중동	270-86	전	205	205	조정희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로100, 112동1603호 (수송동,군산수송세영리첼아파트)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번 영로 162 (조촌동)	근저당권 지상권	
41	중동	270-87	전	208	208	조정희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로100, 112동1603호 (수송동,군산수송세영리첼아파트)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번 영로 162 (조촌동)	근저당권 지상권	
42	중동	270-88	도	5	5	유한회사 삼진건설	군산시 중동 270-83	근로복지 공단 익산지사		압류	
43	중동	270-89	도	6	6	유한회사 삼진건설	군산시 중동 270-83	근로복지 공단 익산지사		압류	
44	중동	272-31	도	6	6	김영애	군산시 중동 272-18	군산시 수산업 협동조합	군산시 조 촌동 828-1 (관리과)	가압류	
								군산 축산업 협동조합	군산시 신 풍동 1001-3 (삼학지소)	경매신청 근저당권	
45	중동	273-58	전	340	340	군산시					
46	중동	256-5	대	6	6	이용일	서울중구신당동340-36				
47	중동	257-5	대	9	9	송만기외5명	군산시 중동 274				
48	중동	265-1	대	3	3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49	중동	266-2	대	93	93	군산시					
50	중동	266-3	대	61	61	국	기획재정부				
51	중동	266-5	대	172	172	군산시					
52	중동	267	대	16	16	장호근외3명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47-18				
53	중동	269-5	도	291	16	국	건설부				
54	중동	269-6	대	162	162	심영술	군산시중동258				
55	중동	269-7	대	24	24	국외1명	기획재정부				
56	중동	269-8	대	49	49	군산시					
57	중동	269-26	대	3	3	추추봉	군산시중동50				
58	중동	269-28	대	9	9	국외1명	기획재정부				
59	중동	269-29	대	36	13	군산시					
60	중동	267-1	대	53	53	장호근외1명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47-18				
61	중동	265-88	대	39	39	군산시					
62	중동	266-6	대	68	25	군산시					
63	중동	266-7	대	5	5	국	기획재정부				
64	금암동	273-9	공 장 용 지	100	100	국	국토해양부				
65	금암동	273-41	대	131	131	군산시					
66	금암동	273-69	대	77	77	군산시					
67	금암동	274-75	대	341	341	국	국토해양부				
68	금암동	274-79	공 장 용 지	146	146	두창수외21 명	군산시 대명동 184-3	두창수 외20명	군산시 대명동 184-3	대지권	
69	금암동	274-80	대	145	145	군산시					
70	금암동	274-81	대	131	131	김순희외6명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35동701호(산본동, 솔거아파트)				
71	금암동	274-237	대	44	44	국	국토해양부				
72	금암동	274-246	대	24	24	국	국토교통부				
73	금암동	274-247	대	18	18	국	국토교통부				
74	중동	273-2	대	258	258	이성옥	군산시 중동 273-2				
75	중동	274-9	대	198	198	군산시					
76	중동	274-160	대	13	13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77	중동	274-161	대	56	56	김순희외6명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35동701호(산본동, 솔거아파트)				
78	중동	274-162	대	70	70	군산시					
79	중동	248-2	대	122	122	군산시					
80	중동	250-5	대	66	66	국외1명	기획재정부				
81	중동	250-6	대	60	60	군산시					
82	중동	253-7	대	102	102	군산시					
83	중동	259-1	대	55	55	유은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동로 47-4(인후동2가)				
84	중동	259-2	대	42	42	군산시					
85	금암동	274-65	도	13	13	국	재정경제원				
86	금암동	274-66	대	23	23	국	국토해양부				
87	금암동	274-67	대	89	89	박성환	전라북도군산시강변로19-7(금암동)	남부안새 마을금고	부안군 진 서면 청자 로 953	근저당권	
88	금암동	274-68	대	136	136	국	국토교통부				
89	금암동	274-91	도	202	202	국	재정경제원				
90	금암동	274-126	대	106	106	군산시					
91	금암동	274-127	대	23	23	국	재정경제원				
92	금암동	274-128	대	83	83	군산시					
93	금암동	274-129	대	102	102	유석진	군산시 금암동 274				
94	금암동	274-130	대	17	17	국	재정경제원				
95	금암동	274-131	대	83	83	김영옥	군산시 금암동 274-131				
96	금암동	274-132	대	96	96	군산시					
97	금암동	274-133	대	50	50	정요순	군산시 중동 274-183				
98	금암동	274-134	대	63	63	군산시					
99	금암동	274-235	도	23	23	국	재정경제원				
100	금암동	274-236	대	84	84	국	국토해양부				
101	금암동	274-245	대	15	15	국	국토교통부				
102	금암동	274-234	대	50	50	국	국토해양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시	리.동	번지					성명	주소	
1	군산시	중동	273-2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95.5	㎡	이성옥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7길 88, 금강아트빌2차 305호(산북동)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0	㎡			
				차양		1.0	식			
				담장	블록	11.1	M			
				대문		1.0	식			
2	군산시	중동	274-9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43.2	㎡	군산시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75.3	㎡			
				창고	목조 슬레이트지붕	3.2	㎡			
				세면장 및 화장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3.6	㎡			
				차양		1.0	식			
				바닥포장		1.0	식			
				감나무		1.0	주			
3	군산시	금암동	273-69	주택 1층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93.5	㎡	군산시		
				주택 2층	적벽돌조 싱글지붕	81.5	㎡			
				계단		1.0	식			
4	군산시	금암동	273-41	주택	벽돌조 강판지붕	100.1	㎡	군산시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9.0	㎡			
				차양		2.0	식			
				대문		1.0	식			
				계단		1.0	식			
				바닥포장		1.0	식			
				천리향		1.0	주			
5	군산시	중동	274-162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61.8	㎡	군산시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5.8	㎡			
				차양		1.0	식			
				대문		1.0	식			
				계단		1.0	식			
				바닥포장		1.0	식			
6	군산시	중동	274-161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27.1	㎡	김영수	군산시 금암동 274-81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20.9	㎡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8.0	㎡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8	㎡			
				차양		4.0	식			
				장독대		1.0	식			
				바닥포장		1.0	식			
				대문		1.0	식			
				대추나무		1.0	주			
7	군산시	중동	273-79	주택 (창고)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24.8	㎡	김학모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3길 27 (창인동1가)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4.0	㎡			
				담장		15.0	M			
				바닥포장		1.0	식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시	리.동	번지					성명	주소	
8	군산시	중동	273-69	주택	조적조 강판지붕	57.9	㎡	군산시		
9	군산시	중동	273-62	주택	조적조 함석지붕	46.9	㎡	노봉서	군산시 중동 273-62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1길 113, 701호(금동,한신아파트)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46.0	㎡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7.5	㎡			
				차양		3.0	식			
				보일러실		1.0	식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계단		1.0	식			
10	군산시	중동	273-80	주택	벽돌조 강판지붕	111.0	㎡	군산시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9.6	㎡			
				대문		1.0	식			
				계단		1.0	식			
				바닥포장		1.0	식			
				단풍나무		1.0	주			
				장미		1.0	속			
				동백나무		2.0	주			
				천리향		1.0	주			
				철쭉		2.0	주			
				화단		1.0	식			
				11	군산시	중동	273-18			
담장		12.3	M							
대문		1.0	식							
골프연습장		1.0	식							
창고	철골조 천막	1.0	식							
바닥포장		1.0	식							
염나무		3.0	주							
화단		1.0	식							
12	군산시	중동	274-352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1.3	㎡	군산시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6	㎡			
				담장		5.0	M			
				차양		2.0	식			
				대문		1.0	식			
13	군산시	중동	274-227	주택 1층	벽돌조 슬래브지붕	49.4	㎡	군산시		
				주택 2층	벽돌조 슬래브지붕	49.4	㎡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	49.4	㎡			
				창고 (보일러실)	판넬조 판넬지붕	1.0	식			
				계단		2.0	식			
				차양		1.0	식			
				화단		2.0	식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시	리.동	번지			성명	주소			
14	군산시	중동	274-228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1.5	㎡	미상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49.4	㎡			
				창고	조적조 판별지붕	6.0	㎡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3.8	㎡			
				대문		1.0	식			
				계단		1.0	식			
				바닥포장		1.0	식			
				주택	조적조 강판지붕	64.1	㎡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8	㎡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5.9	㎡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5	㎡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차양		1.0	식			
				장독대		1.0	식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5.9	㎡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8.8	㎡			
				창고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1.4	㎡			
				담장		1.0	M			
				대문		1.0	식			
				계단		1.0	식			
				바닥포장		1.0	식			
				차양		1.0	식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82.7	㎡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7.8	㎡			
				담장		1.0	M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9.3	㎡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무화과		1.0	주							
화단		1.0	식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24.8	㎡							
15	군산시	중동	273-17	차고	철재	1.0	식	군산시		
				담장		23.7	M			
				울타리		40.0	M			
				감나무		3.0	주			
				탱자나무		2.0	주			
				무화과		1.0	주			
16	군산시	중동	265-54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62.1	㎡	국	재무부	
17	군산시	중동	266-5	주택	벽돌조 슬래브지붕	44.5	㎡	미상		
				계단		1.0	식			
				주택	조적조 함석지붕	65.2	㎡			
				화장실 및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13.0	㎡			
				차양		1.0	식			
				대문		1.0	식			
계단		1.0	식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시	리.동	번지					성명	주소	
18	군산시	중동	266-2	주택	조적조 슬래브 및 함석지붕	68.1	㎡	군산시		
				화장실 및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6.0	㎡			
				창고	목조 슬레이트지붕	7.5	㎡			
				계단		2.0	식			
				바닥포장		1.0	식			
19	군산시	중동	269-6	주택 1층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7.4	㎡	심영술	군산시 중동 258	
				주택 2층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7.4	㎡			
				주택	조적조 기와지붕	59.0	㎡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9.4	㎡			
				창고 (욕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7.7	㎡			
				대문		1.0	식			
				차양		1.0	식			
계단		1.0	식							
20	군산시	중동	259-2	주택	조적조 판넬지붕	47.0	㎡	군산시		
				차양		1.0	식			
21	군산시	중동	259-1	주택	벽돌조 슬래브지붕	42.9	㎡	유은하	전주시 덕진구 백동로 47-4 (인후동2가)	
				차양		1.0	식			
22	군산시	중동	259-1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23	군산시	중동	248-2	주택	조적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90.3	㎡	군산시		
				보일러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6.0	㎡			
				화장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3.0	㎡			
				차양		1.0	식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24	군산시	중동	250-6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74.6	㎡	군산시		
				차양		1.0	식			
				대문		1.0	식			
				계단		1.0	식			
25	군산시	중동	250-5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29.5	㎡	군산시		
26	군산시	중동	253-7	주택	조적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지붕	95.6	㎡	군산시		
				차양		1.0	식			
				계단		2.0	식			
				대문		1.0	식			
27	군산시	중동	263-5	담장		21.9	M	조종웅	군산시 중동 261	
				대문		1.0	식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시	리·동	번지			성명	주소			
28	군산시	중동	262	사철나무		3.0	주	홍기원	군산시 중동 262	
				개나리		6.0	주			
				장미		2.0	주			
				주목		1.0	주			
				회양목		1.0	주			
				철쭉		5.0	주			
				감나무		2.0	주			
				기타수목		2.0	주			
29	군산시	중동	262	감나무		1.0	주	홍기원	군산시 중동 262	
30	군산시	중동	269-1	주택	조적조슬레이트지붕	91.2	㎡	군산시		
				주택	목조 함석지붕	85.0	㎡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13.0	㎡			
				차양		1.0	식			
				담장		5.0	M			
				바닥포장		1.0	식			
				장독대		1.0	식			
31	군산시	중동	273-44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49.1	㎡	박유업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안1길 42 (중동)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68.0	㎡			
				창고 및 화장실	판넬조 판넬지붕	8.6	㎡			
				욕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9.0	㎡			
				차양		4.0	식			
				장독대		1.0	식			
				창고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0.0	㎡			
				동백나무		2.0	주			
				앵두나무		1.0	주			
				화단		1.0	식			
32	군산시	중동	270-82	창고	경량철골조 슬레이트 및 판넬지붕	76.7	㎡	조정희	군산시 수송동로 100, 112동 1603호 (수송동, 세영리철타파트)	
				이동식 화장실		1.0	식			
33	군산시	금암동	274-67	주택	벽돌조 슬래브지붕	82.9	㎡	박성환	전라북도 군산시 강변로 19-7 (금암동)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5.0	㎡			
				차양		1.0	식			
				담장		8.5	M			
				담장		5.0	M			
				대문		1.0	식			
				계단		2.0	식			
34	군산시	금암동	274-131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1.0	㎡	김영옥	군산시 금암동 274-131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7.9	㎡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0	㎡			
				대문		1.0	식			
				담장		12.0	M			
				등나무		1.0	주			
				사철나무		2.0	주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시	리.동	번지					성명	주소	
35	군산시	금암동	274-132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8.8	㎡	군산시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42.8	㎡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계단		1.0	식			
36	군산시	금암동	274-126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69.4	㎡	최영미	군산시 미룡로 42, 305동 1202호 (미룡동, 미룡(3)주공아파트)	
				담장		5.5	M			
				차양		1.0	식			
37	군산시	금암동	274-129	주택	조적조 판별지붕	65.1	㎡	유석진	전라북도 군산시 강변로 13-11 (금암동)	
				담장		11.7	M			
				대문		1.0	식			
				바닥포장		1.0	식			
				장독대		1.0	식			
				건사		1.0	식			
				계사	목조 강판지붕	1.0	식			
				감나무		1.0	주			
38	군산시	금암동	274-133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46.0	㎡	정요순	전라북도 군산시 강변로 19-13 (금암동)	
				차양		1.0	식			
				대문		1.0	식			
39	군산시	금암동	274-134	주택	조적조 함석지붕	66.5	㎡	군산시		
				계단		1.0	식			
				대문		1.0	식			